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견본주택 운영 안내
-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의 정부방역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홈페이지(www.울진역센트럴두산위브.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 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청약 및 사전검수,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청 일린민원과 – 31047호(2022.06.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 53-12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8개동 총 3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특별공급 174세대(일반 [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35세대, 신혼부부 66세대, 노부모부양 9세대, 생애최초 3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6월 13일(월)		06월 14일(화)	06월 15일(수)	06월 21일(화)	07월 04일(월) ~ 07월 0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견본주택 방문 (10:00 ~ 14:0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방문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울진역 센트럴 두산위브 견본주택 (장소 : 울진군 울진은 읍내리 366)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주소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6 – 문의 : 054-782-808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 ~ 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 ~ 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22000272	01	059.9283	59	59.9283	18.8281	78.7564	30.5844	109.3408	31.8359	70	7	7	14	2	7	37	33	4
		02	074.9368A	74A	74.9368	23.2747	98.2115	38.2441	136.4556	39.8090	99	9	9	19	2	9	48	51	5
		03	074.9740B	74B	74.9740	22.7812	97.7552	38.2631	136.0183	39.8287	33	3	3	6	0	3	15	18	2
		04	084.9273	84	84.9273	25.5094	110.4367	43.3427	153.7794	45.1162	138	13	13	27	4	13	70	68	2
		05	091.1313	91	91.1313	26.8475	117.9788	46.5090	164.4878	48.4120	6	0	0	0	0	0	0	6	0
		06	094.9065	94	94.9065	27.6617	122.5682	48.4356	171.0038	50.4175	6	0	0	0	0	0	0	6	0
		07	100.0413	100	100.0413	28.7692	128.8105	51.0561	179.8666	53.1453	2	0	0	0	0	0	0	2	0
		08	115.4985	115	115.4985	33.1790	148.6775	58.9448	207.6223	61.3567	34	0	3	0	1	0	4	30	0
		09	122.3625	122	122.3625	34.6594	157.0219	62.4478	219.4697	65.0031	2	0	0	0	0	0	0	2	0
		10	126.9297	126	126.9297	35.6444	162.5741	64.7787	227.3528	67.4293	2	0	0	0	0	0	0	2	0
		11	132.5925	132	132.5925	36.8713	169.4638	67.6721	237.1359	70.4376	1	0	0	0	0	0	0	1	0
	합계										393	32	35	66	9	32	174	219	13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 합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중 벽체면적은 전용면적부분과 맞닿은 부분(중심면적 - 전용면적)으로써 각 해당 세대에 포함되며, 벽체면적외 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 원)

주택형 (약식)	동 · 호별(층별)	층수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금(10%) 1차 계약 시	2차 계약일+30일	중도금(60%) 1차(10%) 2022. 11. 30	2차(10%) 2023. 03. 30	3차(10%) 2023. 07. 30	4차(10%) 2023. 11. 30	5차(10%) 2024. 03. 30	6차(10%) 2024. 06. 30	잔금 (30%) 입주지정일
59	102동 1, 2호 105동 2, 3호	1F	3	40,205,100	179,494,900		219,700,000	10,000,000	1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21,970,000	65,910,000
		2F	4	41,083,500	183,416,500		224,500,000	10,000,000	12,450,000	22,450,000	22,450,000	22,450,000	22,450,000	22,450,000	22,450,000	67,350,000
		3F	4	41,961,900	187,338,100		229,300,000	10,000,000	1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68,790,000
		4F	4	43,700,400	195,099,600		238,800,000	10,000,000	1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71,640,000
		5-15F	43	43,700,400	195,099,600		238,800,000	10,000,000	1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23,880,000	71,640,000
		16-20F	12	44,578,800	199,021,200		243,600,000	10,000,000	14,360,000	24,360,000	24,360,000	24,360,000	24,360,000	24,360,000	24,360,000	73,080,000
74A	103동 1, 2호 105동 1호	1F	3	51,679,200	230,720,800		282,400,000	10,000,000	1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28,240,000	84,720,000
		2F	3	52,813,800	235,786,200		288,600,000	10,000,000	1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28,860,000	86,580,000
		3F	3	53,930,100	240,769,900		294,700,000	10,000,000	1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29,470,000	88,410,000
		4F	3	56,181,000	250,819,000		307,000,000	10,000,000	2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5-15F	33	56,181,000	250,819,000		307,000,000	10,000,000	2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16-20F	15	57,297,300	255,802,700		313,100,000	10,000,000	2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93,930,000
	105동 4, 5호	1F	1	53,289,600	237,910,400		291,200,000	10,000,000	1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87,360,000
		2F	2	54,442,500	243,057,500		297,500,000	10,000,000	1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29,750,000	89,250,000
		3F	2	55,595,400	248,204,600		303,800,000	10,000,000	2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30,380,000	91,140,000
		4F	2	57,919,500	258,580,500		316,500,000	10,000,000	2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94,950,000
		5-15F	22	57,919,500	258,580,500		316,500,000	10,000,000	2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31,650,000	94,950,000
		16-20F	10	59,072,400	263,727,600		322,800,000	10,000,000	2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96,840,000
74B	108동 1, 2호	1F	2	50,416,500	225,083,500		275,500,000	10,000,000	1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27,550,000	82,650,000
		2F	2	51,514,500	229,985,500		281,500,000	10,000,000	18,150,000	28,150,000	28,150,000	28,150,000	28,150,000	28,150,000	28,150,000	84,450,000
		3F	2	52,612,500	234,887,500		287,500,000	10,000,000	1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28,750,000	86,250,000
		4F	2	54,808,500	244,691,500		299,500,000	10,000,000	1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89,850,000
		5-15F	22	54,808,500	244,691,500		299,500,000	10,000,000	1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89,850,000
		16-20F	3	55,888,200	249,511,800		305,400,000	10,000,000	2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30,540,000	91,620,000
84	106동 1, 2호	1F	2	58,706,400	262,093,600		320,800,000	10,000,000	2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32,080,000	96,240,000
		2F	2	59,987,400	267,812,600		327,800,000	10,000,000	22,780,000	32,780,000	32,780,000	32,780,000	32,780,000	32,780,000	32,780,000	98,340,000
		3F	2	61,250,100	273,449,900		334,700,000	10,000,000	2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33,470,000	100,410,000
		4F	2	63,812,100	284,887,900		348,700,000	10,000,000	2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104,610,000
		5-15F	22	63,812,100	284,887,900		348,700,000	10,000,000	2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34,870,000	104,610,000
		16-20F	10	65,093,100	290,606,900		355,700,000	10,000,000	2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35,570,000	106,710,000
	101동 1, 2호 / 102동 3호 104동 1, 2호 / 108동 3호	4F	6	67,106,100	299,593,900		366,700,000	10,000,000	2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110,010,000
		5-15F	66	65,788,500	293,711,500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16-20F	26	67,106,100	299,593,900		366,700,000	10,000,000	2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36,670,000	110,010,000
91	101동 1, 2호 / 102동 3호 104동 1, 2호 / 108동 3호	3F	6	65,788,500	267,010,455	26,701,045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94	101동 1, 2호 / 102동 3호 104동 1, 2호 / 108동 3호	2F	6	65,788,500	267,010,455	26,701,045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100	101동 2호 / 104동 2호	1F	2	65,788,500	267,010,455	26,701,045	359,500,000	10,000,000	2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35,950,000	107,850,000
115	107동 1, 2호	4F	2	90,328,800	366,610,182	36,661,018	493,600,000	10,000,000	3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148,080,000
		5-15F	22	88,572,000	359,480,000	35,948,0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16-20F	10	90,328,800	366,610,182	36,661,018	493,600,000	10,000,000	3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148,080,000
122	107동 1, 2호	3F	2	88,572,000	359,480,000	35,948,0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126	107동 1, 2호	2F	2	88,572,000	359,480,000	35,948,0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132	107동 2호	1F	1	88,572,000	359,480,000	35,948,0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	74A	74B	84	115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2	1	3	0	8
	10년이상 복무군인	1	2	0	2	0	5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2	0	5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2	0	5
	북한이탈주민	0	1	0	1	0	2
	장애인	2	2	0	3	0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미성년자 3명 이상	7	9	3	13	3	3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2	2	0	4	1	9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 30%	14	19	6	27	0	66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 30%	7	9	3	13	0	32
합계		37	48	15	70	4	17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5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진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6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금액	신한은행	140-013-776870	교보자산신탁(주) 조혁종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 및 이후 납부하는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하고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7 계약금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 금융 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시행위탁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개인신용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시행위탁자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시행위탁자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